

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

[이대곤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198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9. 27.

발의의원 : 이대곤 의원, 김정태 의원

1. 제안이유

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달성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나. 군민의 권리와 역할, 먹거리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(안 제4조~제7조)
- 다. 위원회 설치, 구성,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2조)

3. 제정 조례안 : 불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
- 국민건강증진법

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달성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“먹거리”란 식품 및 농·축·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을 말한다. 다만,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.
- 2.“먹거리 기본권”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합리적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- 3.“먹거리 보장”이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의 기호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물리적, 사회적,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.
- 4.“지역 먹거리”란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“군”이라 한다)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먹거리를 말한다.
- 5.“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”란 지역 먹거리가 생산·가공된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는 유통체계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.
- 6.“민관협치체계 구축”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, 관련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달성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의 먹거리 기본권(이하 이 조에서 “먹거리 기본

권”이라 한다)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.

②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한다.

③ 군수는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,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적극 협력으로 먹거리에 대한 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군민의 권리와 역할) ① 군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자유롭고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.

② 군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.

③ 군민은 합리적인 먹거리 소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먹거리정책을 시행하고 추진할 때에는,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군수는 5년마다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먹거리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방향
2. 분야 및 단계별 과제, 추진목표
3.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
4.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5. 먹거리 정책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, 설명

회,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먹거리 실시계획의 수립 등) 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먹거리 실시계획(이하 “실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실시계획의 추진결과 평가 등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.

1. 먹거리 이용 실태 및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실시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

③ 군수와 군 소속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을 할 때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먹거리보장 위원회의 설치) ① 군수는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확대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보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종합계획의 수립,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심의·의결
2. 실시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심의·의결
3.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정책 제언
4.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포럼 및 정책제언
5. 먹거리 정책의 군민 홍보
6. 먹거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한 먹거리 교육
7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

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8조를 준용한다.

1.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.
2.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직 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가.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

나.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그 소속 공무원

다.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현과 먹거리 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

라. 먹거리와 관련된 학교, 연구소, 학회, 협회,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소속된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먹거리정책 사무 담당 과장이 되며, 서기는 먹거리정책 사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10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,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운영계획 수립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재정지원)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